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규정 제15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」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」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는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라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토요일오후”는 “토요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2”는 “별표1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참관대상의 “특별위원회”는 “위원회회의실”로 하고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5년 12월 30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

류 상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2014년 8월 7일 개정·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어,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개정
- 나.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등
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: <u>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</u>의 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참관의 허가, 일시 등) ①~②(생략) ③참관일시가 “토요일 오후”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본회의 등이 개의 중일 때에는 참관할 수 없다. ④~⑤(생략)</p> <p>제6조(참관안내 및 경로) ①참관안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“별표2”에 의한 경로에 따라 행한다. ②~③(생략)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	<p>제명: <u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</u></p> <p>제1조(목적) … <u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</u>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제5조(참관의 허가, 일시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…………… “토요일”,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참관안내 및 경로) ①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“별표1” ……………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

관계 법령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[시행 2015.7.24.] [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¹⁾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1)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